

문경대학교 학생생활관 규정

제정 1998. 3. 1

개정 2000. 3. 1, 2004. 9. 1, 2005. 4. 15, 2007. 3. 1, 2008. 3. 1, 2010. 9. 8,
2012. 5. 29, 2015. 10. 21, 2018. 6. 12, 2020. 5. 11, 2022. 1. 28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대학의 학생생활관은 문경대학교 학생생활관이라 칭한다.<개정 2012.5.29>

제2조(설치목적) 본 대학 재학생에게 면학을 위한 숙식의 편의를 제공하고, 자유와 규율이 조화된 공동생활을 통해 인격을 도야하며, 건전한 학풍을 진작시키는 데 있다.

제3조(운영) ① 총장의 명을 받아 관장이 이를 통괄 운영, 감독한다.

② 시설이용은 사생에 한한다. 단, 사생이외에 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는 관장이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설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4조(사생활동) ① 질서 있고 명량한 생활을 도모하고 학문의 연구와 교양의 함양을 위한 사생활동을 관장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한다.

② 사생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5조(사생규칙) 관장은 사생의 질서 있는 학생생활관 생활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학생생활관 사생 생활수칙을 따로 정한다.

제2장 운영위원회

제6조(설치) 운영의 기본 방침과 그 밖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생 생활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구성)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 관장
2. 위원 : 사무처장, 각과 학과장으로 구성한다.

제8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 생활관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사생납부금 책정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
4. 입사 및 퇴사
5. 기타 학생 생활관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9조(회의) ① 운영위원회는 매 학기 초에 정기총회를 열고,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2/3이상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3장 직제

제10조(직제) 학생 생활관은 다음과 같은 직제로 편성한다.

1. 관장 1인
2. 관장 이외에 학생주임 1명, 행정실무1명, 관장보(남1, 여1), 미화원 2명 등의 필요에 따라 더 둘 수 있다.

제11조(선임 및 임무) ① 관장은 본 대학 교직원으로 보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총장이 임명한다.

② 관장은 전반적인 학생 생활관 업무를 관장하고 사생 및 소속직원을 지도 감독한다.

③ 직원 및 용원의 업무분장은 관장이 따로 정한다.

제4장 입사 및 퇴사

제12조(입사 허가 자격) 입사 허가는 매 학기초에 결정하고, 그 기간은 한 학기로 한다. 입사일과 퇴사만기일은 원칙적으로 학사력에 따른다.

제13조(입사자격) 입사자격은 입사선발 기준표로 총점을 내어 고득점자에서 저득점자순서로 선발하며. 장애인, 국가유공자 자녀, 기초생활수급대상가정의 자녀는 우선선발 대상으로 한다. 단, 복학생은 휴학 전 학기 성적을 기준으로 한다.(입사선발 기준은 별지와 같다)<개정 2015.10.21>

제14조(입사자격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입사할 수 없다.

1. 학칙에 의해서 징계처분 및 학사경고를 받은 자
2. 법정전염병 환자 및 보균 자
3. 사칙을 위반하여 퇴사 처분을 받은 자
4.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
5. 특별한 사유 없이 임의로 퇴사한 자
6. 휴학중인자
7. 기타 관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5조(사생의 선발) 학생 생활관에 입사하고자 하는 자는 사생선발 기간 중에 입사지원서를 관장에게 제출한다. 관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사생을 선발하고 소속 학과장에게 통지한다. 단, 중도에 입사하고자하는 자는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입사지원서를 관장에게 제출하고 관장이 입사허가를 결정한다.

제16조(입사등록) 입사허가 통지서를 받은 학생은 지정된 소정의 등록을 마치고 다음 구비서류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납입 기일 내 등록하지 않으면 입사허가가 취소된다.

1. 사생신상 카드
2. 서약서
3. 지정된 의료기관의 건강진단서
4. 기타 관장이 제출을 요하는 자료

제17조(퇴사) 사생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학기에 퇴사할 수 없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정의 퇴사원서를 제출하여 관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사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관장이 퇴사 조치할 수 있다.

1. 휴학, 제적 등으로 재학생의 신분을 상실한 자
2. 미등록자 및 학생 생활관 납부금 미납자
3. 학칙에 유기정학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
4. 사칙을 위반하여 퇴사결정이 된 자
5. 기타 공동생활의 영위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18조(퇴사절차) 개사기간 만료 또는 원에 의하여 퇴사하거나 퇴사처분을 받은 학생은 관계직원의 입회하에 공동비품을 반납하여야 하며 분실 또는 파손 시는 변상을 하고 퇴사하여야 한다.

제19조(상·벌점제) 학생 생활관 규정 및 규칙을 위반한 사생에 대하여 벌점 기준 표에 의하여 벌점을 부과한다.

1. 벌점이 15점 초과 시 강제퇴사 조치한다.

2. <삭제 2018.6.12>

제20조(학생 징계의 건의) 관장은 파렴치한 행위 등에 대하여 퇴사 처분된 자의 학사징계를 학교 당국에 건의 할 수 있다.

제5장 경비

제21조(납부금) ① 학생 생활관 관리비는 학생 생활관 등록기간 중에 한 학기 분을 선납하여야 한다. 사생의 사정에 의해 체납할 경우는 연기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연기승인은 1회에 한하며 지정 납기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② 납입된 납부금은 반환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에 의하거나 본인의 질병, 사망,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생 생활관 생활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환하되 그 세부사항은 별도 규정에 의한다.

제22조(납부금의 관리) 학생 생활관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집행한다.

1. 관리비 : 사생이 사용하는 광열, 난방, 공공요금, 기본시설 보수비, 소모품 구입비와 직원수당, 사무비 등에 사용한다.
2. 연 사생비 예산 중 5%를 감가상각비로 이월시킨다.

제23조(납부금에 대한 별도 규정) 규정에 의거 퇴사 시에는 관리비를 규정에 의해 반환한다.<개정 2018.6.12.>

1. 생활관 퇴사학생은 [표 1]학생생활관 관리비 환불 기준표에 따라 관리비를 환불 할 수 있다.<개정2018.6.12.>, <개정 2020.5.11.>, <개정 2022.1.28.>

[표1]학생생활관 관리비 환불 기준표

구분	환불기준일	환불금액
입사 포기	개관일 1일 전	100%
퇴사	개관일수 1/4선 이전	75%
	개관일수 2/4선 이전	50%
	개관일수 3/4선 이전	25%
	개관일수 3/4선 이후	없음

2. <삭제 2022.1.28>

3. 입·퇴사 시의 식비는 입·퇴사일이 포함된 주를 기준으로 1주(5일) 단위로 납부

및 환불한다.(퇴사 사유 이외의 식비 환불은 5일 이상 실습시에만 가능) 단, 6월, 12월 퇴사자는 식비가 환불되지 아니한다.<개정 2022.1.28.>

4. 단기입사 관리비의 경우 주(7일) 단위로 납부한다.(단기입사는 3주 이내에 한함. 단, 국가 재난 상황에서는 별도 지침에 따른다.) 단기입사자 중 입사일 이후 퇴사학생은 학사일정 변동으로 인한 경우에는 “일”단위로 환불 가능하고, 개인사정으로 인한 경우에는 환불되지 아니한다.<개정 2022.1.28.>

제24조(회계연도) 학생 생활관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도 2월말까지로 한다.

제25조(예산 및 결산) 관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수입, 지출예산을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관장은 매 회계연도 말에 지체 없이 지출에 관한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5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입사자 선발 기준표 <개정 2015.10.21>

- 신입생과 재학생의 비율 6 : 4(여석 10% 남겨 둠)
- 거리(60점) + 성적(40) + 생활관 생활(별점 차감)

거리(Km)	점수
200이상	60점
200~150	50점
150~100	40점
100~50	30점
50~20	20점
50~20(셔틀 운행 지역)	10점

성적	점수
90점 이상	40점
85점 이상	35점
80점 이상	30점
75점 이상	25점
70점 이상	20점